

“소비자는 소득공제 40%, 판매자는 수수료 0%” 정답은 제로페이!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(등기)

1.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(전용차로의 설치) 및 제160조 제3항(과태료)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와 관련입니다.

2. 무인카메라와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.

가. 위반기간 : `18.11.13 ~ `19.04.17

- 무인CCTV : `19.04.08 ~ `19.04.17

- PDA, 시민신고 등 : `19.11.13 ~ `19.04.17

나. 통보건수 : **최하은 등 4,269명**

다.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

구 분	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			
	계	무인CCTV	PDA	시민신고 등
금 회	4,269	4,013	101	155
전화 누계	36,765	35,816	241	708
누 계	41,034	39,829	342	863

라. 통보방법 :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

마.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: `19.04.19 ~ `19.05.09(20일간)

붙임: 사전통지 등기발송 내역 1부. 끝.

